

수도권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조치현황(요약)

※ 변경사항은 적색 표시 / 시설별 의무 핵심방역수칙(p.15~25 참조)

□ 특별방역기간 : 2020.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구 분	특별방역기간 조치결과	조 치 기 간
집합·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금지] ▶ 인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 인원 기준에 맞춰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 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위크샵, 계모임 등 -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추석행사)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대회 등 포함 	<p>[중수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공공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사* : [연기, 취소] * 전 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 주관행사 ※ 불가피 개최 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p>[중수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스포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스포츠 행사 : [무관중] * 프로야구, 축구, 씨름경기 등 	<p>[중수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다중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국공립시설* : [운영중단]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하는 국공립시설 	<p>[중수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10월	○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중단]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중단]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9. 1. ~ 9. 6. ▶ (1차 연장) 9. 7. 0시 ~ 9. 13. 24시 ▶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 공공문화시설 : [인원 50% 이내, 제한운영]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9. 28. 0시 ~ 10. 11. 24시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 [폐쇄]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24. ~ 별도 해제 시 ▶ (1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2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 인천 해수욕장 : [폐장]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 : [운영 중단]	[중수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 유통물류센터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중수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9. 28. 0시 ~ 10. 11. 24시
	○ 연휴기간 외식, 여가 일부 다중이용시설 8종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중수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 방역강화) 9. 28. 0시 ~ 10. 11. 24시

	<p>○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p> <p>*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독서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살균살균식장, 목욕탕, 사우나, 살균식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타디움, 직업훈련기관</p> <p>※ 위 다중이용시설은 8. 19부터 10. 11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대상시설 유형이 일부 조정됨</p>	<p>[중수본]</p> <p>▶(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p>
	<p>○ PC방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p> <p>※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 섭취 가능 9. 28. ~)</p> <p>※ 고위험시설 해제(9. 14. 0시)</p>	<p>[중수본]</p> <p>▶(당 초) 8. 19. 18시 ~ 9. 13. 24시 ▶(1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2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p>
	<p>○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운영자제 권고]</p> <p>※ 중단권고(8. 23.-9. 27) → 자체권고(9. 28. 0시~)</p>	<p>[인천시]</p> <p>▶(당 초) 8. 23. 0시 ~ 별도 해제 시 ▶(1차 연장) 8. 23. 0시 ~ 9. 13. 24시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p>
	<p>○ 병원(산부. 요양시설(내용 추가) 등 [방역 강화]</p> <p>※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p> <p>※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전국, 2단계 한시),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p> <p>*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추합검사(Kpadding) 실시 검토</p> <p>*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p>	<p>[중수본]</p> <p>▶(당 초) 8. 30. 0시 ~ 9. 6. 24시 ▶(1차 연장) 9. 7. 0시 ~ 9. 27. 24시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p>
	<p>○ 방문판매업 소모임 : [점검·관리 강화]</p> <p>※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p>	<p>[중수본]</p> <p>▶(당 초) 8. 30. 0시 ~ 9. 6. 24시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p>
	<p>○ 교회</p> <p>-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조치)</p> <p>※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 변경안내 (업무연락 9. 18)</p> <p>○ 적용기간 : 9. 20(일) ~ 별도 해제 시</p> <p>○ 비대면 예배는 영상 제작용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p> <p>- 예배실 300석은 이상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p> <p>*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개인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실시</p> <p>*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구역도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 철저</p>	<p>[중수본] : 교회시설</p> <p>▶(당 초) 8. 19. ~ 별도 해제 시 ▶(1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2차 연장) 9. 20. ~ 별도 해제 시 ▶(3차 연장) 9. 28. 0시 ~ 별도 해제 시</p>
	<p>○ 타종교시설</p> <p>-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 등 11개 항목 준수 필수</p>	<p>[인천시] : 타종교시설</p> <p>▶(당 초) 8. 30. ~ 별도 해제 시 ▶(1차 연장) 9. 14. 0시 ~ 별도 해제 시</p>

		<p>○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p> <p>※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p>	<p>[중수본]</p> <p>▶(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p>
	학 교	<p>○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p>	<p>▶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의사항</p>
기 관 · 기 업	공 공	<p>○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p> <p>※ 유연·재택근무 등 현원 1/3 의무 시행</p>	<p>[인천시]</p> <p>▶(당 초) 8. 20. ~ 별도 해제 시 ▶(1차 연장) 8. 24. ~ 별도 해제 시</p>
	민 간	<p>○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p>	<p>[중수본]</p> <p>▶(당 초)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1차 연장) 9. 7. 0시 ~ 9. 20. 24시 ▶(2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3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p>
	우 리 市 행 정 조 치	<p>○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p> <p>- (적용기간) 2020. 8. 20. 15:00 ~ 별도 해제 시</p> <p>- (적용장소)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p> <p>*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p> <p>*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축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p> <p>**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p> <p>-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과태료 10만원 이하)</p> <p>※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및 FAQ 전파(2020. 9. 2.)</p> <p>○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p> <p>- (당 초) 2020. 8. 24. 0시 ~ 9. 6. 24시</p> <p>-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p> <p>- (2차 연장) 2020. 9. 21. 0시 ~ 10. 11. 24시</p> <p>-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p> <p>- (벌 금) 벌금 300만원 이하</p> <p>※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p> <p>○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p> <p>-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p> <p>-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p> <p>- (과 태 료) 운송사업자(300만원 이하) / 이용자(10만원 이하)</p>	
	추 석 연 휴	<p>○ 인천가족공원 전면 폐쇄(20. 9. 30. ~ 10. 4.)</p> <p>- 성묘객 분산을 위해 미리 성묘하기(20. 9. 12~ 9. 29.)</p> <p>- 전국 최초 온라인 성묘(http://grave.insiseol.or.kr) : 예약완료(9.7-9.18) / 이용(9.28-10.11)</p> <p>○ 민자(유료)터널 통행료 징수(20. 9. 30. ~ 10. 2.) ※ 정부방침에 따라 징수</p> <p>- 문학산·원적산·만월산 민자터널</p>	

수도권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조치 세부방안

※ 변경사항은 적색 표시 / 시설별 의무 핵심방역수칙(p.15~25 참조)

I. 개 요

1 | 집합 · 모임 · 행사

1-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 [금지]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이때 집합 · 모임 · 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 · 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 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추석 행사)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대회 등 포함

< 인원 기준 >

- 원칙적으로 집합 · 모임 · 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 ·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인원 기준에 맞춰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 사 례 >

-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 ▶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 예 외 >

- ▶ 정부 ·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 연기가 불가한 경우

2 | 공공행사

2-1. (정부, 지자체, 관련 산하 · 공공기관 등 주관 행사) : [언기 · 취소]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불가피 개최 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 모든 회식 금지,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

3 | 스포츠 행사

3-1. 프로 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 [무관중 경기]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야구, 축구, 골프, 씨름경기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 진행

4 [공공] 다중이용시설

4-1. (실내) 국공립시설* : [운영 중단]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

4-2.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 중단] (인천시)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4-3.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 중단] (인천시)

- ▶ (당 초) 2020. 9. 1. ~ 9. 6.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4-4. 공공 문화시설 : [이용인원 50% 이내 제한운영] (인천시)

- ▶ (신규)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공공도서관,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제물포구락부, 은율탈춤전수관, 인천도호부관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광안내소, 어린이과학관 등

4-5.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일부 폐쇄] (인천시)

- ▶ (당 초)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2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전면 폐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증 예방을 위해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 市 관할 모든 공원구역에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8. 24. 0시)

4-6. 인천 해수욕장 : [폐장]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 / 해양수산부 지침(2020. 8. 18.)

5 [민간] 다중이용시설

5-1. 고위험시설 11종 : [운영 중단]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12종]
※ 고위험시설 추가지정(8. 19. 18시) : PC방, 결혼식장뷔페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12종]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11종]
※ PC방 고위험시설 해제(9. 14.)로 12종 → 11종으로 변경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11종]

※ 고위험시설(11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5-2. 유통물류센터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집합제한]

- ▶ (신규)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로 당초 중수본 운영중단 대상에서 제외됨(8. 19. ~9. 27)
-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로 인한 집합제한(9. 28. ~)

5-3. 연휴기간 일부 다중이용시설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집합제한]

- ▶ (연휴 방역강화) 2020. 9. 28. 0시 ~ 10. 11. 24시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의무화(20석 초과는 의무화 / 20석 이하는 권고)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어앉기 ② 테이블 간 띄어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2)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3) 놀이공원·워터파크 :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5-4.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집합제한]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12종)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독서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타디움카페, 직업훈련기관

※ 위 다중이용시설은 8. 19부터 9. 28. 현재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대상시설 유형 일부 조정

5-5. PC방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집합제한]

- ▶ (당 초) 8. 19. 18시 ~ 9. 13. 24시
- ▶ (1차 연장) 9. 14. 0시 ~ 9. 27. 24시
- ▶ (2차 연장) 9. 28. 0시 ~ 10. 11. 24시

※ PC방 고위험시설 해제(9. 14. 0시)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섭취가능(9. 28. ~)

5-6.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운영자제 권고] (인천시)

- ▶ (당 초) 2020. 8. 23.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8. 23. 0시 ~ 9. 13.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주민편의시설 :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 중단 권고(8. 23. ~ 9. 27.) → 자제 권고(9. 28. 0시 ~)

5-7. 병원(신규)·요양시설 등(내용 추가) : [방역강화]

- ▶ (당 초) 2020. 8. 30. 0시 ~ 9. 6. 24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전국, 2단계 한시),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pooling) 실시 검토

※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밀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금지

5-8. 방문판매업 소모임 : [점검·관리 강화]

- ▶ (당 초) 2020. 8. 30. 0시 ~ 9. 6. 24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

※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점검·관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제조합에서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운영 중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5-9. 종교시설

□ **교회 (정부)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 ▶ (당 초) 2020. 8. 19.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2차 연장) 2020. 9. 20. ~ 별도 해제 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별도 해제 시**

교회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예배만 실시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종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수도권 교회 대상 비대면 예배 기준 조정(9. 20. ~ 별도 해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 - 예배실 300석은 이상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 *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개인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실시 ※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⑤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타 종교시설 (인천시)

-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정규 미사·법회 시 11개 항목 준수(필수)
- ▶ (당 초) 2020. 8. 30.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14. 0시 ~ 별도 해제 시

타 종교시설 (교회 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②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③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④ 간접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4주간 보관) 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⑥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⑦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⑧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⑨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⑩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 운영 ⑪ 미사·법회 시 성가 자제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5-10.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6 학교(유.초.중.고)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7 | 기관 . 기업

7-1.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민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휴가, 재택근무 등 현원(필수인원 등 제외) 1/3 의무 시행
- ▶ (당 초) 2020. 8. 20.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8. 24. 0시 ~ 별도 해제 시
 -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 필수인원 등 제외 후 대상자의 1/3이상 의무시행
 - ※ 소방,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은 제외
 -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 임신 및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 시차출퇴근제 등 병행실시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 ※ 군.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은 市 시행기준 준용 권고(기관장 판단 시행)

7-2.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제한 권고

- ▶ (당 초)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3차 연장) 2020. 9. 28. 0시 ~ 10. 11. 24시

8 | 우리 市 행정조치

8-1.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 ▶ (적용기간) 2020. 8. 20. 15:00 ~ **별도 해제 시 까지**
- ▶ (적용장소) 실내.외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 (계도기간) 2020. 10. 12. 까지
- ▶ (시행일자) 2020. 10. 13.
- ▶ (과 태 료) 10만원 이하

8-2.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 (당 초) 2020. 8. 24. 0시 ~ 9. 6. 24시까지
-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2차 연장) 2020. 9. 21. 0시 ~ **10. 11. 24시**
- ▶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
- ▶ (벌 금) 벌금 300만원 이하
 -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8-3. 인천시 관내 등록업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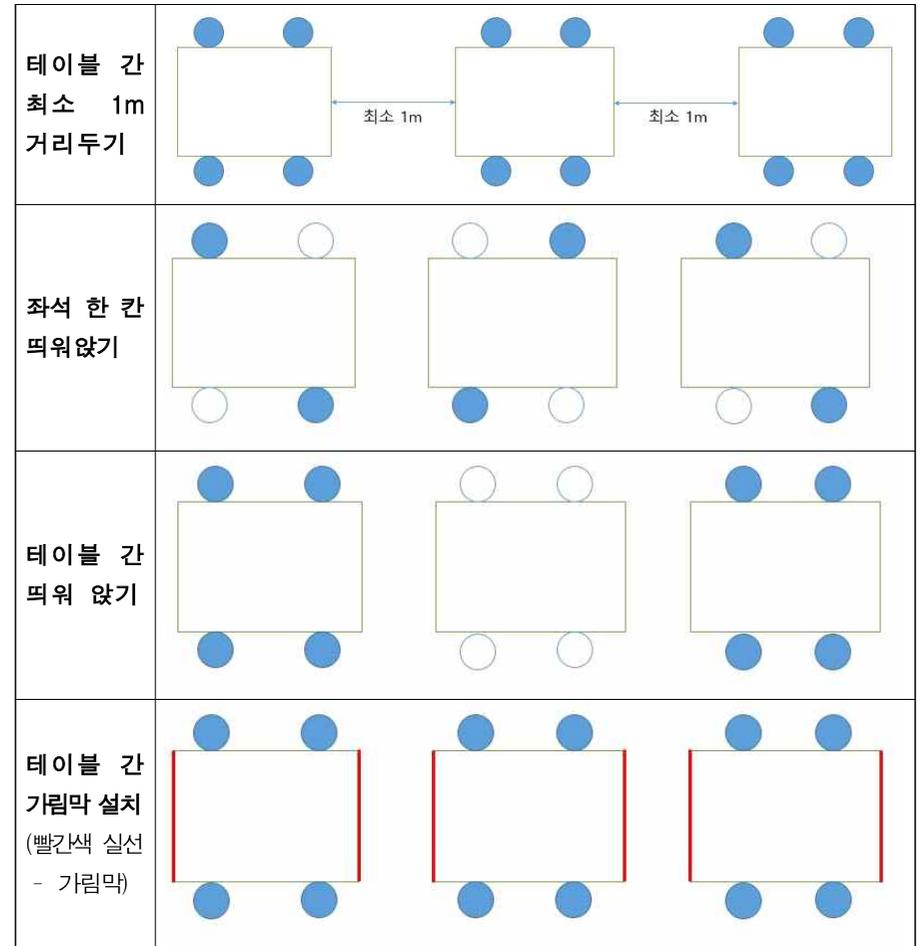
-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 (계도기간) 2020. 10. 11. 까지
- ▶ (시행일자) 2020. 10. 12.
- ▶ (과 태 료) 운송사업자(300만원 이하) / 이용자(10만원 이하)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카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p> <p>-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p> <p>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p> <p>▶ 출입자 명부 관리</p> <p>-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p> <p>*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p> <p>-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p> <p>▶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p> <p>*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p> <p>▶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p> <p>▶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p>	<p>▶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p> <p>-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p> <p>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p> <p>▶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p> <p>-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p> <p>▶ 마스크 착용</p> <p>*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p>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7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참고

수도권 음식점·카페 관련 FAQ

Q1.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카페가 대상인가요? 무슨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매장 좌석(실내·외 포함)이 20석을 초과하는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대상임**

- 20석 이하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함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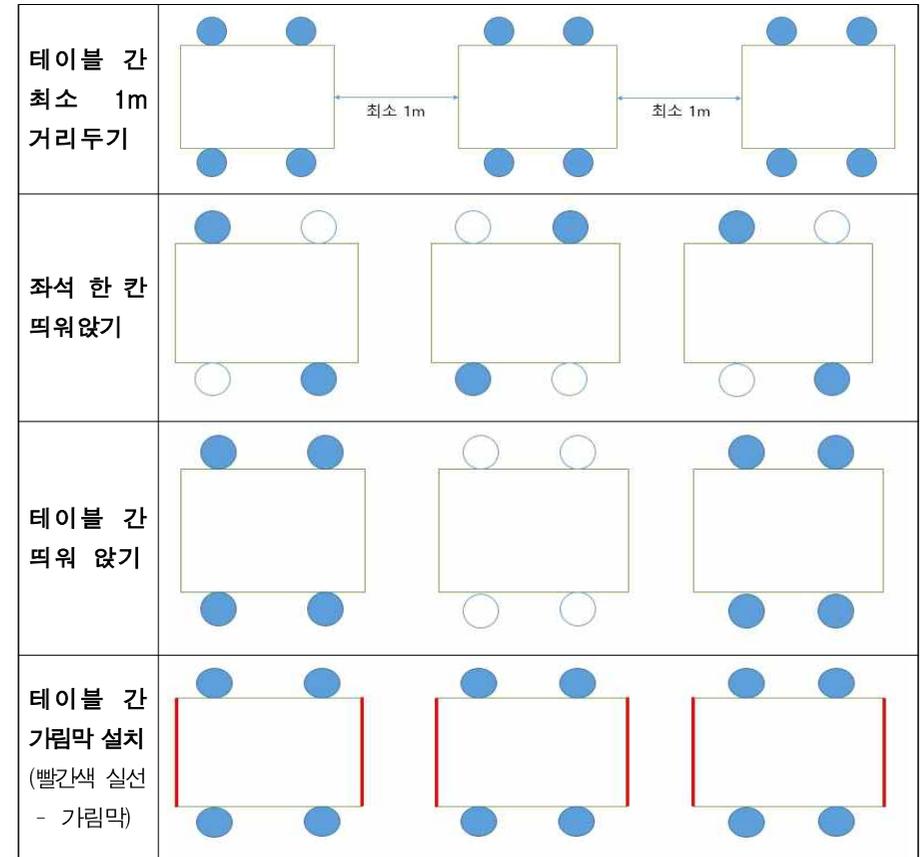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Q2.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



Q3.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4.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5.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영화관 · 공연장**

< **영화관·공연장**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 제외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 제외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놀이공원·워터파크**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교습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 (학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고용부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 **실내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실내체육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참고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팅장	롤러스케이팅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

□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PC방**

<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 제외